

• 알뜰적립보험 •

생활상식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이라는 걸끄러운(?) 통과의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세금이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다. 그 가운데 보험도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보험하면 먼저 일반 민영보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는 우체국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차제에 여기서 지난 11월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알뜰적립보험」에 대해 소개해 본다.

체신보험은 민영보험이 보험료가 싸고 가입절차가 간편하며 특히 납입 유예기간이 민영보험이 2개월에 반해 체신보험은 3개월로 1개월이 길다. 대출함에 있어서 민영보험은 환급금의 70%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체신보험은 80%를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 이자율은 민영보험이 12%이지만 체신보험은 11.5%이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해약율이 29.0%에 이른데 비해 체신보험은 13.6%에 그쳐 그만큼 공신력을 굳혀가고 있다.

93. 11. 1 부터 판매한 신상품 알뜰적립보험은 금리 자유화에 대응하여 가입자의 이자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립부분의 순보험료에 대하여 11%로 이자를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만기에 생활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된 보험으로 가입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예를들어 40세 남자가 3년만기 계약보험금 1,000만원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매월 261,000원씩 불입하여 만기가 되면 세금공제 없이 10,606,7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상품은 계약자의 형편에 따라 단기 목돈마련 뿐만 아니라 생활설계 및 노후 자금마련도 가능토록 3년 · 4년 · 5년 · 7년 · 10년으로 하였다. 한편 우발적인 사고(교통사등)로 인한 사망시에는 계약 보험금액의 2배를, 그외의 사망시에는 계약보험금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때 사망 시점의 적립금액을 가산하여 지금함으로써 가입자는 이중으로 보장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이외에도 사고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 부금을 지급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재해사망 특약과 재해입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상품은 세금이 없으므로 적금과 같이 이자도 매우 높고 보장성을 확대한 알뜰보험이다.